

August 6, 2026

2026년 7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6년 7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 및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및 지역 탄소중립 전략 주요 내용

1.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 배경 및 주요 내용

● 정부와 여당이 7. 8. 당정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 협의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 발표
-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26. 8. 4., 한정애 의원 등 22인 발의)
- 전방위적 지원체계 가동,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적극적 유도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 로드맵 설계

- '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의무화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

●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 및 공시정보 활용 확대 추진

-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시 파일럿테스트 진행
-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28), Scope 3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28)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기관투자자가 ESG 요소 점검·공개

2.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 공시 시기 및 대상

-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시작
-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및 상황 평가 후 30년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
- 공시 첫해에 한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범위 제외
- 공시범위 포함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

● 공시채널 및 면책

-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초기 3년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
-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 확보
- 그 이후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는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 면제, 형사책임도 배제

● 제3자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
-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 스코프 3 유예 및 공시기준

- Scope 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
- 2031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32년 5조원, 33년 2조원 이상(잠정)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
-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 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공시 이행지원 및 공시정보 활용 방안

● 기업 공시 실무 지원

- 회계기준원은 질의 반복 사안에 대해 Best practice를 도출·공개
- 기후부는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공개('28)

● 공급망 데이터 산정 관리

- 기후부는 주요 업종별 Scope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28)
- 현장수요 높은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1,000개 구축('28)
-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개발을 추진

● ESG 종합 컨설팅

- 산업부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추진
- 금융위는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ESG 컨설팅 및 자금지원 강화
- 기후부·중기부도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 추진

● 공시 정보 활용 확대

-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
- 기관투자자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공개화
-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시 공시정보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 실행 전략

■ 지역 이행모델 실천 7대 역점사업

① 에너지

- 햇빛·바람소득마을, 주택·아파트 지붕과 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도서지역 전환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추진

② 폐기물

- 2030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

③ 수송

-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추진
- 전기차·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및 충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지급

④ 주택·건물

- 건물 등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 중앙정부는 공사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

⑤ 흡수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 적용,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산

⑥ 기후적응

- 야외근로자·농어민 등 기후보험을 도입
- 저소득가구 대상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지원

⑦ 시민실천·녹색일자리

-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지역의 녹색 기반시설 운영·관리·시공 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감축모델 발굴 확산

-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적용
 -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목록화
 -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상 활용 편의성 제고

■ 성과 환류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에 반영
 -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 상금 등을 제공하는 등 보상을 강화
 - 우수사례집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확산을 유도

II. 기후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6. 7. 27.	고위공무원 안세진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고위공무원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서기관 정혜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휴 직
7. 24.	고위공무원 홍동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파견	파견 해제 명예 퇴직
	고위공무원 심진수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파견
7. 23.	서기관 류종민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	주체코공화국대사관 1등서기관
7. 22.	환경연구관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7. 21.	서기관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전담 직무대리
7. 10.	부이사관 배연진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부이사관 이주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명예 퇴직
	과학기술서기관 정윤화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7. 3.	서기관 최한창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력팀장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서기관 유용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력팀장
	과학기술서기관 유재영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교육 훈련 (프랑스)
7. 1.	고위공무원 홍동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파견	파견 연장 (6개월) (이후 '26. 7. 24. 파견 해제, 명예 퇴직)
	과학기술서기관 이민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파견	파견 연장 (1년)
	서기관 정윤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파견	파견 연장 (1년)
	과학기술서기관 맹학균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파견
	서기관 송나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장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통합허가제도과
	과학기술서기관 전원혁	대기환경국 통합허가제도과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서기관 권기성	환경산업정책관실 원전지역협력과장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황윤길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환경산업정책관실 원전지역협력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최정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II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49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6. 7. 3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수임자 및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유지·보수 주체'로 규정하고, 규율 대상자를 '하천 관리청'에서 '유지·보수 주체'로 변경 -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의 완료 시한을 해당 연도 말에서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로 연장 - 안전점검 시 관계 전문가의 참여, 안전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병행 실시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의 통합 수립 근거를 마련	수질
7.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왕겨 등 보조원료를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혼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을 2,000kcal/kg 이상으로 개정하여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 -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자는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고체연료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고체연료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	수질

7.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낙동강(영산강·섬진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민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 -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 -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	수질
7. 2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위 허가를 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수질
7. 21. (‘27. 1.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기타
7. 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	에너지

7. 21.	상수원관리규칙	-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요건에 맞추어 협의절차 등을 정비 -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주체가 보호구역 주민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인 경우에는 장소 제한 폐지 -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호소의 수면 등에도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그 설치·운영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수질
7.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경우에는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춤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	대기
7.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공통
7. 7.	자연공원법	-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자연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	
7. 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27. 12. 31.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수질
7. 7. (‘27. 1. 8.)	폐기물관리법	-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폐기물
7. 7. (‘27. 1.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폐기물
7. 7. (‘27. 1. 8.)	악취방지법	-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취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대기
7. 7. (‘27. 1. 8.)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	대기
7. 7. (‘27. 1.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역 단위의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수질
7. 7.	대기환경보전법	-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	대기

(27. 1. 8.)		근거를 신설 -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7.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규정 - '표시·광고'의 의미를 제품의 겉면,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수단을 통하는 것으로 구체화	화학
7.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등의 관할구역을 정비 -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8. 8. 31.까지 2년 연장	기타
6. 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물기업의 범위가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	수질
7. 30.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인 "핵심자원 순환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	폐기물
7. 30.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민간 기업의 K-GX 투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K-GX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7. 1. 29.까지 6개월 연장	기후

7. 29.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8. 7.)으로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 신설 및 공개 유예 근거 등을 마련	화학
7. 27. (8. 2.)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74종의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신설 -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 전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 확인 규정을 마련 - 리튬화합물의 물리적 격리 필요 취급기준에서 구획선을 삭제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7. 26.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을 신설 - 재활용 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를 마련 -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추가	폐기물
7. 24.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및 준수사항을 마련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제출하는 관리계획서 등 작성방법·승인절차 등을 규정 - 대체복토재 종류와 복토기준을 마련	폐기물
7. 20.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	폐기물
7. 16.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환경신기술인증 평가기준의 명칭을 현행화 -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권자로 규정 - 기술원장이 실시한 사후평가의 기후부 제출일을 5월 31일로 규정	기타

		- 신기술인증 이후 보유기술 활용하여 환경분야 R&D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가점을 지급	
7. 1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사업 방식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 차입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부절차를 개정 -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정의 및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용자기간에 관한 조항 신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을 도입	에너지
7. 1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기업부담 완화와 최신 국제 환경규제 반영 등을 위해 대변기 등 10종 제품군 인증 기준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제품군 1종을 폐지	기타
7. 14.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 제출 기간, 작성 원칙 및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	기타
7. 14.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국토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중 보호지역정보망에 정보를 연계 관리할 보호지역 목록을 고시로 제정	자연
7. 14.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 환경소음 IoT 측정소 120개 지점과 환경소음 정밀측정소 5개 지점의 신규 설치를 반영 - 환경소음 측정소 205개 폐쇄 및 10개 지점 이전 설치 반영 - 항공기 및 철도 소음 등에 대해 폐쇄 및 이전 설치를 반영	대기
7. 1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폐기물 (국립환경

		규정」에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과학원)
7. 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26년 3/4분기 융자금리를 융자업무위탁기관은 2.70%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3.70%로 설정	기타
7. 8.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에 대응하고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대상 시설물을 확대 -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시범운영 기간 연장 - 기후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수질
7. 1.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활용되도록 인공구조물의 정보 및 현장 적용성을 강화 - 실측 기반의 어종별 이동 특성을 반영	수질 (국립환경 과학원)
7. 1.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부 소관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의 '26. 3/4분기 융자(대출)금리를 금리인하 대상사업은 1.90% (2.80%), 그 외 사업은 2.90% (3.80%)로 적용	기타
7.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선정 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고시로 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7. 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과불화화합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시험방법을 추가·개선하고, 동시에 정량한계를 강화	수질
6. 30.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 산정지수)	- 202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2113로 하고, 2026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2113로 산정	폐기물

6. 30.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468,562톤으로 하고,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의 전년도 총 매입량은 108,084톤으로 하며, 인구수는 51,609천명으로 산정	폐기물
6. 30.	(202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1,226,471톤으로 하고, 인구수는 51,609천명으로 산정	폐기물
6. 30.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태양광패널) 총 출고량은 283,071톤으로 산정	폐기물
6. 30.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조선업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 -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조선업 사업장이 하나의 고시에서 모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로 분리된 기준을 하나의 고시로 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6. 30.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 투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6. 30.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한-미 관세협약의 후속조치로 미국 인증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를 간소화 -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 관리 확인 규정을 정비 -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동일차종 범위를 유럽 기준과 조화롭게 개정	대기
6. 29.	(담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시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경미한 변경 시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 - 지원사업협의회 서면결의 시 위원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수질

		사항을 추가 - 지원금의 별도 회계 사용 규정과 이월사업 계획수립 기한 규정 등을 신설	
6. 26.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적용 방법을 ①국내 → ②국외(공인기관 제공 계수 사용) → ③실측(신설) → ④이론으로 개정하고, 납 2차 제련의 용융·용해시설, 화장로시설의 화장시설, 도정 및 제분시설의 미곡 도정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를 신설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41건)

예고 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내용	비고
'26. 7. 31. ~ 9.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첨단감시장비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등 업무를 명확히 규정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 -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내용을 삭제	대기
7. 31. ~ 9. 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 지자체장이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를 신설	토양

7. 30. ~ 9.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 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	에너지
7. 30. ~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미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대기
7. 30. ~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대기
7. 29. ~ 9.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저공해조치 후 성능 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대기
7. 29. ~ 9.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을 구체화 -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명령의 이행기간 및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신설 -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을 조정(3년→1년 6개월~2년)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에 맞추어 정비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 -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대기
7. 27. ~ 9. 7.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	수질

		-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 허용	
7. 23. ~ 9.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	자연
7. 23. ~ 9.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 -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고,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	자연
7. 21. ~ 8.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	기타
7. 21. ~ 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기존 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제외 -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범위를 구체화	에너지
7. 15. ~ 8.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 방법을 같음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 -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 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정비	화학

7. 15. ~ 9.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신설	대기
7. 15. ~ 9.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 기존에 3 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신설	대기
7. 13. ~ 8.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성면적 30 만㎡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30/100 이상 증가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에서 제외 -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를 신설 -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을 상향	폐기물
7. 7. ~ 8.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에너지
7. 3. ~ 8. 14.	하천법 시행령	- 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	수질
6. 30.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	자연

8. 10.		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행체계를 규정	
6. 30. ~ 8. 1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	자연
7. 30. ~ 8. 20.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 지표수 수질조사 주기를 분기 1 회 이상에서 반기 1 회 이상으로 변경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 내용을 추가	폐기물
7. 29. ~ 8. 18.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 -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	에너지
7. 29. ~ 8. 19.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 종에 대한 규정 수량을 신설 -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 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 수량을 마련 - 5 종에 대해 인체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 오기 정정 및 유해성 분류 추가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7. 27. ~ 8. 18.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	수질
7. 24. ~ 8. 13.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수소엔진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에 따른 수소엔진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	대기

7. 23. ~ 8. 1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 전송 대상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 조치 시설의 배출폐기물을 포함 -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	폐기물
7. 23. ~ 8.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 기존 지정 물질 3 종에 대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추가 지정 - 방부목재 생산, 흰개미 방제 등 국내 사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 중인 11 종의 II 그룹 물질 승인유예기간을 연장 -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현황 정보를 표시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7. 16. ~ 8.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이나,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 수출됨에 따라 고철, 비철금속을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 -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은 수입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폐기물
7. 16. ~ 8. 5.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 PE 소재 폐합성섬유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 - 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	폐기물
7. 15. ~ 9. 1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 '27년부터 '30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개정 - 소규모제작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판매량 기준연도를 현행화 및 판매량 기준으로 변경 - 기준연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5 만대 이하인 경우 중규모제작자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완화	대기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경우 '27 년~'29 년까지 1 대당 판매실적을 별도로 규정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7 년~'29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하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27 년~'30 년까지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 년으로 규정	
7. 15. ~ 9. 14.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자발적 감축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	대기
7. 15. ~ 9. 14.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중·대형차는 2030 년까지 기준년도(2021 ~2022 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 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 소형차중 승용차와 10 인승 이하 승합차의 온실가스 기준을 '30 년에 현행 70g/km 에서 54g/km 으로 하고, 소형화물차, 11~15 인승 승합차는 146g/km 에서 98g/km 으로 조정	대기
7. 14. ~ 7. 28.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 기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한 만료에 따라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연장	수질
7. 14. ~ 8.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절차 및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발주 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고시 제정	폐기물
7. 13. ~ 8. 3.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 - 공원관리청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	자연

7. 10. ~ 7. 3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로 구분하여 공개 - 유해성심사결과 신규화학물질 6 종 개정과 기존화학물질 78 종 신설 및 6 종을 개정 - 유해성평가결과 6 종을 신설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7. 9. ~ 7. 20.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대규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전 전기 공급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7. 7. ~ 7. 29.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활동을 하려는 경우, 현행 연료전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 감축 활동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의한 감축 활동도 추가로 인정	기후
7. 6. ~ 7. 27.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수은 및 유기인계농약의 보존기간과 암모니아성질소, 카바닐 등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 -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검정곡선 농도를 일부 개정	수질 (국립환경 과학원)
7. 3. ~ 7. 24.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소음원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동일 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외부에 설치된 경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적용 - 기준 초과 여부 평가는 동일 건물 내 사업장 기준과 비교하여 판정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7. 3. ~ 7. 2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중 암모니아-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을 신설 - 자동측정법 교정 주기 등 분석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개정 - 측정횟수 경감(5 회→3 회) 및 정도검사 일치화 등 시료채취 안정성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중 먼지-수동식 측정법을 폐지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58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26. 7. 29. (김정호의원 등 11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용기·1 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금 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 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폐기물
7. 29. (김정호의원 등 11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	자연
7. 28. (이학영의원 등 12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 -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화학
7. 28. (이학영의원 등 11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 -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개정	자연
7. 28. (이학영의원 등 11명)	대기환경보전법	-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 친환경 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 등의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	대기
7. 27. (고동진의원)	전기사업법	-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 를 허용	에너지

등 12명)		- 첨단산업 기업들의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	
7. 27. (진중오의원 등 10명)	폐기물관리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	폐기물
7. 24. (김정호의원 등 10명)	토양환경보전법	-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토양
7. 23. (박정의의원 등 10명)	소음·진동관리법	- 지자체장이 운행차 소음의 상시적인 관리와 운행차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부장관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기
7. 22. (허성무의원 등 11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	에너지
7. 22. (오세희의원 등 11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 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	폐기물
7. 22. (윤준병의원 등 11명)	환경영향평가법	- 일정 지역의 정화 능력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 -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률 정비 - 생태·자연도 1 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 천	자연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	
7. 21. (안도걸의원 등 10명)	폐기물관리법	-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구매하는 경우,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부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	폐기물
7. 20. (이종배의원 등 11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해체 단계에서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	폐기물
7. 20. (박지원의원 등 13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에너지
7. 20. (송재봉의원 등 14명)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 -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테크를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기후
7. 16. (강승규의원 등 11명)	하천법	-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수질
7. 15. (임이자의의원 등 10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	수질

7. 13. (김용태의원 등 10명)	하천법	-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 환경보전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 환경보전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	수질
7. 10. (김용태의원 등 1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	기후
7. 9. (이만희의원 등 16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뿐만 아니라 기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자연
7. 7. (이달희의원 등 11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 년으로 명문화	폐기물
7. 7. (이종배의원 등 16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에너지
7. 6. (서왕진의의원 등 10명)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	수질
7. 3. (이달희의원 등 10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에너지

		5 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 년으로 각각 명문화	
7. 3. (송재봉의원 등 12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기후
6. 29. (박정의의원 등 36명) <이하 아래 법안들은 7. 1. 상임위 회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기후
6. 29. (김위상의의원 등 12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후부장관이 태양광, 풍력 등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 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에너지
6. 29. (김위상의의원 등 12명)	전기안전관리법	-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선	에너지
6. 29. (김위상의의원 등 12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 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폐기물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	
6. 29. (이종배의원 등 12명)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 및 자문에서 심의 및 의결로 확대 -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 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	에너지
6. 29. (김형동의원 등 12명)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 -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기후위기감시 예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	기후
6. 29. (조지연의원 등 13명)	전기안전관리법	-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 -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6. 29. (김태선의원 등 10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	에너지
6. 29. (서왕진의원 등 10명)	석면안전관리법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	화학

		-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 -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 학교 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6. 26. (김태선의의원 등 12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 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자연
6. 26. (어기구의의원 등 12명)	전기사업법	-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
6. 25. (서왕진의의원 등 10명)	석면안전관리법	- 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후 10 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보수·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 -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 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	화학
6. 25. (한정애의원 등 11명)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시 공공하수도의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	수질
6. 25. (한정애의원 등 11명)	전기사업법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	에너지

		-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함 -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6. 24. (조인철의원 등 10명)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	자연
6. 23. (윤준병의원 등 10명)	하천법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부 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	수질
6. 19. (김위상의의원 등 10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하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	자연
6. 19. (박정현의원 등 14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수질
6. 17. (한정애의원 등 11명)	전기안전관리법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6. 16. (박홍배의원 등 18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공통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개선	
6. 16. (한정애의원 등 12명)	수도법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 -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 -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질
6. 16. (한정애의원 등 12명)	물관리기본법	-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	수질
6. 16. (한정애의원 등 13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녹색기업,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를 의무화 - 국내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	기타
6. 15. (이개호의원 등 10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함 -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 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	에너지
6. 15. (이철규의원 등 10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에너지

6. 15. (이상희의원 등 10명)	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는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	에너지
6. 10. (정진욱의원 등 11명)	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	에너지
6. 10. (백선희의원 등 11명)	에너지법	-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에너지
6. 9. (박해철의원 등 10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에너지
6. 9. (박해철의원 등 10명)	전기사업법	-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 - 전기판매 사업자가 기본 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	에너지
6. 8. (김주영의원 등 11명)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 -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 또는 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테크를	기후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	
6. 5. (김주영의원 등 11명)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 재생열의 생산·공급·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조사·통계·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 마련을 위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안으로 제정	에너지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